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19나742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8.

제1 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가단19761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나1980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453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62,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89,474원 및 그중 25,089,474원에 대하여는 2010. 8. 25.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865,163원 및 그중 15,865,163원에 대하여는 2010. 8. 2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 중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까지 항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선택하기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3쪽 7줄의 “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다음에 “또는 확정되기까지의 소송 전체를 ‘선행사건’, 개별 심급을 ‘선행사건 항소심’과 같은 식으로 지칭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5쪽 11줄 [인정근거]란에 갑 8, 10 내지 12호증을 추가한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65,208,311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피고의 책임비율 80%에 해당하는 52,166,648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피고의 총 손해 중 D의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부분인 27,077,174원이라는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선행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로 각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차액인 25,089,474원(= 52,166,648원 - 27,077,174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가불금 30,000,000원은 가불금 지급 당시의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선행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도로교통공단의 잘못된 분석과 형사재판에서의 잘못된 증언을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이므로 잘못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D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가불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D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에게 그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3. 부당이득금 25,089,474원(원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및 선행사건에서 상계로 소멸한 부분²⁾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판결은 원고 청구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 즉, 피고는 원고에게 5,526,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고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D과 피고의 책임비율

(1)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확정된 이 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하 '선행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D과 피고의 책임비율을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D의 신호위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D 20%, 피고 80'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 운전의 스타렉스는 위 교차로 진입 전의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에서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입·주행하던 중 전방의 중앙분리대를 피하다가 스타렉스의 좌전방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 앞쪽 부분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충격하였다.

(나) 피고에 뒤이어 D이 원고의 옆 차로인 2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카니발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위와 같이 선행사고를 낸 스타렉스를 추돌하였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선행사건 확정판결과 원, 피고만 바뀌었을 뿐 당사자가 같고, 쟁점이나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또한 같으나, 다만 선행사건에서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만을 달리한다.

(4)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의 대부분은 선행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로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배척되었거나 이 사건에서의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D과 피고의 책임비율은 'D 20%, 피고

80%'로 인정한다.

다. 부당이득의 범위

(1) 보험약관에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사업자의 치료비 지급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피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선행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원고의 치료비 지급이 피고와의 합의로 종국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원고가 상계로 대항하여 소멸되었음)의 차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

(3)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피해자가 부상하고,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각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 그 각 손해액이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피고의 부상이 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등급 1급(상해등급 중 한도액이 최고로 높다, 진료비 한도액 20,000,000원)에 해당하고,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애 11급(한도금액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그 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3), “피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상해등급 1등급의 진료비 한도액을 초과하고, “피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 역시 위 후유장애 11급의 한도액을 각 초과함은 선행사건에서 인정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부상으로 인한 피고의 일실손해액과 후유장애로 인한 피고의 일실손해액4) 및 보조구 손해액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책임보험한도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52,166,648원(=65,208,311원×0.8)에서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상계로 대항하여 소멸한 27,077,074원을 공제한 25,089,574원(=52,166,648원-27,077,074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89,574원 및 그중 환송전 판결이 인정한 5,526,9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전 판결 선고일인 2019.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나머지 19,562,593원(=25,089,574원-5,526,98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5. 18.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10.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까지도 민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며(민법 제749조 제2항), 패소로 인한 위 간주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를 제기한 때’란 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피고가 그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본소장부분 송달일 이전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가불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부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9,224,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7. 2. 14.(1심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한 환송전 판결은 30,000,000원 및 2015. 6. 3.부터 2019. 1. 8.(환송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 승소 부분 즉,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환송전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지연손해금을 기각한 부분만이 이 법원에

환송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지연손해금을 기각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불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9. 3.부터 선행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도 민법이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이 가불금 30,000,000원에 미달될 경우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위자료 부분은 선행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2014. 6. 12. 확정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선행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2015. 6. 2. 확정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합계가 30,000,000원에 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 2015. 6. 2.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불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5. 6. 3.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기간(2009. 9. 3. - 2015. 6. 2.)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제1심판결은 가불금 30,000,000원 중 9,224,311원의 반환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와 달리 2014. 6. 13.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2015. 6. 3.이 타당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2015. 6.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이 아닌 환송전 판결 선고일인 2019. 1. 8.까지가 되므로, 이 기간(2015. 6. 3. - 2019. 1. 8.)에 대하여 환송전 판결이 인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어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562,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노태현, 판사 김창현

1) 2017. 11. 25.자 준비서면 참조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채무액과 같다.

3) 2017. 11.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4) 피고의 과실을 상계하기 전 부상 및 후유장애로 인한 일일수입의 합계액만 134,528,227원에 달한다(선행사건 확정판결 참조)

5) 이 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때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